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# 004번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울 | 소계 | | | 53,344.96 | 57,181.75 | | | | | | | 58,646.80 |
| | 기타시설 | 1 | 다툼 없는 시설물 | 17,378.00 | 17,378.00 | | | | | | | 17,378.00 |
| | 건축물 | 2 | 사 택 | - | 3,836.79 | | 1.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<br>2.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 제18호증(위성사진), 건축물대장(갑 제31호증) |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, 서울사업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므로,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,836.79 |
| | | 3 | 합숙소 | - | | | 1.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<br>2.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제18호증, 갑제31호증 | 당초 원고가 주장한 1,465.05㎡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상동 | 1,465.05 |
| | | 4 | 다툼없는 건축물 | 35,966.96 | 35,966.96 | | | | | | | 35,966.96 |
| | 소계 | | | 466,731.99 | 122,162.60 | | | | | | | 509,575.80 |
| | | 1 | 다툼없는 시설물 | | | | | | | | | |
| | | 2 | 잔교도크 | - | 5,562.00 | |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| 2015. 4. 10. 준비서면(사진1), 갑라제1호증9(신고서일련번호74번) | 잔교도크 면적을 5,562㎡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. | |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이면 연면적 산정 대상이므로, 이를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함. | 5,562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| |
| | | 3 | 다툼없는 인공시설 | 395,525.00 | 0.00 | | 법면,옹벽,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(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) | 2012. 4.4.자 의견서 참조,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|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함. | | 원고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로 특정됨.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서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95,525.00 |
| | 기타시설 | 4 | SL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,043.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,043.96㎡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.<br>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.<br>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"수조", 펌프장치(STRUCTURE)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.<br>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5 | CW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.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<br>3.갑라제1호증의 14(추가63번)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.3㎡였다가 비과세 주장.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6 | 냉각수배수관1호기 | | 220.86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.00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20.86으로 수정하였음. | 2015. 7. 2.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), 갑라제1호증의10 |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다만 면적은 220.28㎡ 인정. | 220.28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급배수시설 | 7 | 냉각수배수관2호기 | | 284.81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.40 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84.81로 수정하였음. | 상동 | 상동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284.81 |
| | | 8 | 송수관 | | 495.13 | 불특정 |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. 4.23.~5.8.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.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km,2km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. | | 상동 | 495.13 |
| | | 9 | 송수관 | | 600.55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km,3km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. | | 상동 | 600.55 |
| | | 10 | 송수관 | | 129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.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 | | 상동 | 129.00 |
| | | 11 | 송수관 | | 24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. 또한, 직경1.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. | | 상동 | 240.00 |
| | | 12 | 송수관 | | 48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.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. | | 상동 | 480.00 |
| | | 13 | 송수관 | | 884.6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1.52m,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884.64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천 | | 14 | 송수관 | | 2,399.7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2.81m,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2,399.74 |
| | | |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| | 12,729.59 | 불특정 |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| 상동 |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.(세부내역) | | 상동 | 12,729.59 |
| | 기계장치 | 15 | 기계장치 | | 3,399.6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갑라제1호증11(신고서일련번호 95번), 갑라제3호증의1내지7 |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3,399.60 |
| | | 16 | 기계장치 | | 308.31 | 불특정 |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.31이나, 피고기준의 면적은 1,096.71 (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이어 벨트-인도구간면적 788.4임)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3호증1내지7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상동 | 308.31 |
| | | 17 | 탈황폐수처리조 | | 723.0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35), 갑라제4호증2 | 종합폐수처리장(950.48㎡)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㎡에 대한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723.00 |
| | | 18 | 종합폐수처리조 | | 950.48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,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54~55번), 갑라제4호증3 | 폐수처리장(723㎡)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상동 | 950.48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 | 원고, 보조참가인 입증자료 | 피고 주장 | 피고 입증자료 | 법원의 판단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 | | 9,102.32 | 불특정 |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 (세부내역) | | 상동 | 9,102.32 |
| | 수조 | 19 | 다툼 없는 수조 | 3,780.00 | 3,780.00 | | 해당 POND은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/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. 해당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 그 기능은 좌동에 기술한 것과 동일함 중부발전은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음으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.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,80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3,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.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|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한다. | - |
| | | 20 | 다툼 없는 수조 | 4,200.00 | 4,200.0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3 | 상동 | | 상동 | - |
| | | 21 |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| 131.22 | 131.22 | | 기신고 면적은 187.5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1 | 침전조의 경우,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상동 | - |
| | | 22 | 수조(SLP) | | 1,200.00 | | 기신고면적 | 갑라제1호증12(신고서일련번호 98번) | SLP의 경우,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1,200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| |
| | | 23 | 수조(조절지) | | 432.00 | |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,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), 갑라제4호증의2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32.00 |
| | | 24 | 수조(SLP 취수로) | | 1,096.31 | | 1. 기신고 면적<br>2. 2012.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8,59번), 갑라제4호증3 |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1,096.31 |
| | | 25 | 수조(CWP STRUCTURE) | | 446.3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2,53번), 갑라제4호증3 |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446.30 |
| | | | 다툼없는 수조 | | 8,849.21 | 불특정 | 1.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<br>2.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갑라제4호증의1내지3 |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(세부내역)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8,849.21 |
| | | 26 | 애쉬사일로차량실1층 | | 201.88 | |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| 사진2, 갑라제5호증1내지2 |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. 또한,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. | | 건축물로 인정 | 201.88 |
| | | 27 | 애쉬사일로차량실2층 | | 201.88 |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 상동 | 201.88 |
| | 건축물 | 28 | 한전산업사무실 | | 18.00 | | 2004년도 미임대, 증빙서류는 중부발전 내부문건으로 서천군이 증명할 대상이 아님 | 2005년부터 임대 | 2005년부터 임대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필요. | | 임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음 | 18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| 29 | 석회석사일로지지대 | | - | |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<br>(삭제면적:143.20) | 사진3 |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. | | | |
| | | 30 | 다름 없는 건축물 | 63,095.77 | 63,095.77 | | | | | | | 63,095.77 |
| 양양 | 소계 | | | 7,289.64 | 51,016.14 | | | | | | | 48,826.14 |
| | 건축물 | 1 | 다름 없는 건축물 | 7,289.64 | 7,289.64 | | | | | | | 7,289.64 |
| | 저장소 | 2 | 하부댐 | | | | | | | | | |
| | 시설물 | 3 | 시설물 | | 43,726.50 | | 어도, 진입도로(하부댐,발전소), 진입터널도 포함되어야 함 | "갑다 제6호증 1내지 5"(2012.08.13)<br>"갑다 제13호증"(2013.05.08)<br>"갑다 제14호증","갑다 제15호증 1내지3" 및 "갑다 제16호증 1내지3'(2013.05.08) | * 어도 320㎡는 댐체로 보아 2004년~2006년 과세대상.<br>*진입도로(하부댐,발전소) 13,048㎡는 구내의 도로로 볼수없고,구외도로까지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할 경우 보령시 240,000㎡가 추가 포함되어야함.<br>*진입터널 11,865㎡는 경비초소 밖에 있어 사업장면적포함대상 아님.<br>*작업터널(1,2,5) 16,303.5㎡는 공사시공 위한 시설로 이용되다 공사후 폐쇄한 시설로 폐쇄년도 확인불가임.<br>*작업터널(3) 2,190㎡는 공사장진입시설로 사용된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06년도까지 과세대상임. | 참고자료21: 행자부심사 2002-120(2002.3.25) 을제72호증1내지2 을제73호증 | 1. 진입도로, 진입터널은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시설물에 포함.<br>2. 작업터널(1,2,5)는 2004. 12. 27. 준공되어 사용되었으므로, 사업장 시설에 포함.<br>3. 작업터널(3)은 2005. 6. 30. 준공되었으므로 제외함. | 41,536.50 |
| 인제 | 소계 | | | 93.22 | 93.22 | | | | | | | 93.22 |
| | 건축물 | 1 | 다름없는 건축물 | 93.22 | 93.22 | 0 | | | | | | 93.22 |
| 인천 | 소계 | | | 91,080.44 | 91,080.44 | | | | | | | 91,080.44 |
| | 건축물 | 1 | 다름 없는 건축물 | 52,378.54 | 52,378.54 | | | | | | | 52,378.54 |
| | 시설물 | 2 | 다름 없는 시설물 | 38,701.90 | 38,701.90 | | | | | | | 38,701.90 |
| | 소계 | | | 38,023.83 | 38,023.83 | | | | | | | 38,023.83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제주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30,630.50 | 30,630.50 | | | | | | | | 30,630.50 |
| | 시설물 | 2 | 다툼 없는 시설물 | 7,393.33 | 7,393.33 | | | | | | | | 7,393.33 |
| 보령(피고) | 전 체 | | | 3,877,373.88 | 480,386.61 | | | | | | | | 1,104,039.12 |
| 합계 | 전 국 | | | 4,533,937.96 | 839,944.59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1,850,285.35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# 별지 [illegible]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울 | 소계 | | | 56,041.45 | 57,181.75 | | | | | | | 58,646.80 |
| | 기타시설 | 1 | 다룸 없는 시설물 | 17,378.00 | 17,378.00 | | | | | | | 17,378.00 |
| | 건축물 | 2 | 사 택 | - | 3,836.79 | | 1.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<br>2.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 제18호증(위성사진), 건축물대장(갑 제31호증) |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, 서울사업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므로,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,836.79 |
| | | 3 | 합숙소 | - | | | 1.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<br>2.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제18호증, 갑제31호증 | 당초 원고가 주장한 1,465.05㎡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상동 | 1,465.05 |
| | | 4 | 다룸없는 건축물 | 38,663.45 | 35,966.96 | | | | | | 원고가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| 35,966.96 |
| | 소계 | | | 465,864.49 | 121,310.36 | | | | | | | 508,690.30 |
| | | 2 | 잔교도크 | | 5,562.00 | |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| 2015. 4. 10. 준비서면(사진1), 갑라제1호증9(신고서일련번호74번) | 잔교도크 면적을 5,562㎡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. | |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이면 연면적 산정 대상이므로, 이를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함. | 5,562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기타시설 | 3 | 다툼없는 인공시설 | 395,525.00 | 0.00 | | 법면,옹벽,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(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) | 2012. 4.4.자 의견서 참조,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| |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함. | | 원고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로 특정됨.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서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95,525.00 |
| | | 4 | SL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,043.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,043.96㎡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.<br>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.<br>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"수조", 펌프장치(STRUCTURE)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.<br>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5 | CW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.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<br>3.갑라제1호증의 14(추가63번)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.3㎡였다가 비과세 주장.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| 다툼없는 시설 | | | 불특정 | 특정되지 않음 | | | | | |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급배수시설 | 6 | 냉각수배수관1호기 | | 220.86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.00 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20.86으로 수정하였음. | 2015. 7. 2.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), 갑라 제1호증의10 |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다만 면적은 220.28㎡ 인정. | 220.28 |
| | | 7 | 냉각수배수관2호기 | | 284.81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.40 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84.81로 수정하였음. | 상동 | 상동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284.81 |
| | | 8 | 송수관 | | 495.13 | 불특정 |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. 4.23.~5.8.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.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2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. | | 상동 | 495.13 |
| | | 9 | 송수관 | | 600.55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3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. | | 상동 | 600.55 |
| | | 10 | 송수관 | | 129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.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 | | 상동 | 129.00 |
| | | 11 | 송수관 | | 24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.<br>또한, 직경1.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. | | 상동 | 240.00 |
| | | 12 | 송수관 | | 48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.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. | | 상동 | 480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천 | | 13 | 송수관 | | 884.6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1.52m,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884.64 |
| | | 14 | 송수관 | | 2,399.7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2.81m,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2,399.74 |
| | | |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| | 12,729.59 | 불특정 |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| 상동 |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.(세부내역) | | 상동 | 12,729.59 |
| | 기계장치 | 15 | 기계장치 | | 3,399.6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갑라제1호증11(신고서일련번호 95번), 갑라제3호증의1내지7 |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3,399.60 |
| | | 16 | 기계장치 | | 308.31 | 불특정 |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.31이나, 피고기준의 면적은 1,096.71 (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-인도구간면적 788.4임)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3호증1내지7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상동 | 308.31 |
| | | 17 | 탈황폐수처리조 | | 723.0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35), 갑라제4호증2 | 종합폐수처리장(950.48㎡)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㎡에 대한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723.00 |
| | | 18 | 종합폐수처리조 | | 950.48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,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54~55번), 갑라제4호증3 | 폐수처리장(723㎡)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상동 | 950.48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 | | 9,102.32 | 불특정 |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 (세부내역) | | 상동 | 9,102.32 |
| | 수조 | 19 | 다툼없는수조(SLP) | 3,780.00 | 3,780.00 | 불특정 |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/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. 해당시설물은 돌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 그 기능은 좌동에 기술한 것과 동일함 중부발전은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음으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.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,80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3,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.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|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은 제외되어야 함. | - |
| | | 20 | 다툼없는수조(SLP) | 4,200.00 | 4,200.00 | 불특정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3 | 상동 | | 상동 | - |
| | | 21 | 다툼없는저탄장침전조 | 131.22 | 131.22 | 불특정 | 기신고 면적은 187.5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1 | 침전조의 경우,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상동 | -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| 22 | 수조(SLP) | | 1,200.00 | 불특정 | 기신고면적 | 갑라제1호증12(신고서일련번호 98번) | SLP의 경우,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1,200.00 |
| | | 23 | 수조(조절지) | | 432.00 | 불특정 |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,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), 갑라제4호증의2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32.00 |
| | | 24 | 수조(SLP 취수로) | | 1,096.31 | 불특정 | 1. 기신고 면적<br>2. 2012.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8,59번), 갑라제4호증3 |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1,096.31 |
| | | 25 | 수조(CWP STRUCTURE) | | 446.3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2,53번), 갑라제4호증3 |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446.30 |
| | | | 다툼없는 수조 | | 8,882.47 | | 1.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<br>2.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갑라제4호증의1내지3 |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(세부내역)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8,849.21 |
| | | 26 |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| | 201.88 | |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| 사진2, 갑라제5호증1내지2 |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. 또한,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. | | 건축물로 인정 | 201.88 |
| | | 27 |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| | 201.88 |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 상동 | 201.88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 |
| | 건축물 | 28 | 한전산업사무실 | | - | | 2005년부터 임대 | | | | | - | |
| | | 29 | 석회석사일로지지대 | | - | |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 (삭제면적:143.20) | 사진3 |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. | | | | |
| | | 30 | 다툼없는 건축물 | 62,228.27 | 62,228.27 | | | | | | | 62,228.27 | |
| 양양 | 소계 | | | 89,381.08 | 89,381.08 | | | | | | | 68,675.09 |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12,145.28 | 12,145.28 | 0.00 | | | | | | 12,145.28 | |
| | 저장조 | 2 | 하부댐,유수지 | 34,616.29 | 34,616.29 | 0.00 | | | |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댐체를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유수지 면적인 20,705.99㎡는 제외되어야 함. | 13,910.30 | |
| | 시설물 | 3 | 다툼 없는 시설물 | 42,619.51 | 42,619.51 | 0.00 | | | | | | 42,619.51 | |
| | 소계 | | | 249,849.22 | 277,508.52 | ######## | - | - | - | - | - | 59,628.52 |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 |
| 인제 | 저장조 | 1 | 다툼없는 상부댐유수지 | 200,000.00 | 200,000.00 | 0 | -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<br>-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<br>-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| 참고자료 4-1 |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시설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'수조'로 볼 수 없음. 특히, 2004년~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. 시설물로서 2004년~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.1.1이므로 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.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시에도 존재(2,569,690.25㎡)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. | 참고자료 11: 2008년 감심제180호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댐체를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함. | - |
| | 도로 | 2 | 진입도로포장 | | 17,880.00 | 17880 |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진입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| 2012. 3. 30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-2 | 진입도로는 한전이 지자체에 이관하여 준공하는 등 지자체가 관리하여 구내도로로 볼 수 없음. | 2012.5.14.준비서면 참고자료 1-4: 상부댐진입도로설명서 |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. | 0 | |
| | | 3 | 상부댐횡단도로 | | 2,040.00 | 2040 |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상부댐횡단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| 상동 | 횡단도로의 경우 댐체 면적과 중복되어 제외되어야 함. | 2012.5.14.준비서면 참고자료 1-6 |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. | 2,040.00 | |
| | | 4 | 다툼없는 상부댐체 | 41,640.00 | 41,640.00 | 0 | | | | | | | 41,640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원고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기타 | 5 | 상부댐체옹벽 | | 7,739.30 | 7739.3 | 물을 저장하기 위해 상부댐의 일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막은 시설물로서 전체면적이 49,379㎡이나 41,640㎡을 신고함. 나머지 7,739㎡도 추가로 포함해야 함. | 2013. 6. 19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-1, 3-2 | 상부댐체를 당초 상부댐이라 하다가 이후 댐체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참고자료 1-6을 보면, 상부댐 전체면적이 49,379.82㎡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전체면적의 84%를 상회하는 41,640㎡를 댐체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상황임.<br>참고자료 1-2자료에 의하면 상부댐의 경우 댐마루폭 10m이고, 댐길이 335m로 댐체면적은 3,350㎡임.<br>위 사항과 같이 상부댐체와 상부댐체 옹벽은 중복되는 면적임. | 2012. 5. 14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-6 |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. | 7,739.30 |
| | | 6 | 기타시설물 | 8,116.00 | 8,116.00 | - | | | | | | 8,116.00 |
| | | 7 | 다툼없는 건축물 | 93.22 | 93.22 | - | | | | | | 93.22 |
| | 소계 | | | 100,151.67 | 100,151.67 | | | | | | | 100,151.67 |
| 인천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63,768.78 | 63,768.78 | | | | | | | 63,768.78 |
| | 시설물 | 2 | 다툼 없는 시설물 | 36,382.89 | 36,382.89 | | | | | | | 36,382.89 |
| | 소계 | | | 43,724.57 | 43,724.57 | | | | | | | 43,724.57 |
| 제주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35,745.68 | 35,745.68 | | | | | | | 35,745.68 |
| | 시설물 | 2 | 다툼 없는 시설물 | 7,978.89 | 7,978.89 | | | | | | | 7,978.89 |
| 보령 | 전 체 | | - | ######### | 486,969.72 | | | | | | | 1,110,961.98 |
| 합계 | 전 국 | | | 4,890,545.97 | 1,176,227.67 | ######## | - | - | - | - | - | 1,950,478.93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# 별지 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울 | 소계 | | | 42,028.47 | 45,865.26 | | | | | | | 47,330.31 |
| | 건축물 | 1 | 사 택 | - | 3,836.79 | | 1.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<br>2.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 제18호증(위성사진), 건축물대장(갑 제31호증) |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, 서울사업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므로,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,836.79 |
| | | 2 | 합숙소 | - | | | 1.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<br>2.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제18호증, 갑제31호증 | 당초 원고가 주장한 1,465.05㎡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상동 | 1,465.05 |
| | | 3 | 다툼없는 건축물 | 42,028.47 | 42,028.47 | | | | | | | 42,028.47 |
| | 소계 | | | 466,828.48 | 107,786.26 | - | - | - | - | - | - | 504,230.18 |
| | | 1 | 다툼없는 시설물 | | | | 특정되지 않음 | | 당초 중부발전 신고 시설물로 이견이 없는 시설임. | | 오입력된 면적으로 삭제처리함 | |
| | | 2 | 잔교도크 | | 5,562.00 | |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| 2015. 4. 10. 준비서면(사진1), 갑라제1호증9(신고서일련번호74번) | 잔교도크 면적을 5,562㎡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. | |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이면 연면적 산정 대상이므로, 이를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함. | 5,562.00 |
| | | 3 | 다툼없는 인공시설 | 395,525.00 | 0.00 | | 법면,옹벽,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(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) | 2012. 4.4.자 의견서 참조,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|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함. | | 원고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로 특정됨.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서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95,525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기타시설 | 4 | SL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,043.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,043.96㎡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.<br>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.<br>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"수조", 펌프장치(STRUCTURE)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.<br>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5 | CW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.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3.갑라제1호증의14(추가63번)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.3㎡였다가 비과세 주장.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. | |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6 | 냉각수배수관1호기 | | 220.86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.00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20.86으로 수정하였음. | 2015. 7. 2.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), 갑라제1호증의10 |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다만 면적은 220.28㎡ 인정. | 220.28 |
| | | 7 | 냉각수배수관2호기 | | 284.81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.40 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84.81로 수정하였음. | 상동 | 상동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284.81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급배수시설 | 8 | 송수관 | | 495.13 | 불특정 |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. 4.23.~5.8.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.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2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. | | 상동 | 495.13 |
| | | 9 | 송수관 | | 600.55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3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. | | 상동 | 600.55 |
| | | 10 | 송수관 | | 129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.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 | | 상동 | 129.00 |
| | | 11 | 송수관 | | 24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. 또한, 직경1.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. | | 상동 | 240.00 |
| | | 12 | 송수관 | | 48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.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. | | 상동 | 480.00 |
| | | 13 | 송수관 | | 884.6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1.52m,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884.64 |
| | | 14 | 송수관 | | 2,399.7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2.81m,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2,399.74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천 | | |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| | 3,665.61 | |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| 상동 | |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.(세부내역) | | 상동 | 12,729.59 |
| | 기계장치 | 15 | 기계장치 | | 3,399.60 |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갑라제1호증11(신고서일련번호 95번), 갑라제3호증의 1내지7 | |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3,399.60 |
| | | 16 | 기계장치 | | 308.31 | |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.31이나, 피고기준의 면적은 1,096.71 (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-인도구간면적 788.4임)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3호증 1내지7 |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상동 | 308.31 |
| | | 17 | 탈황폐수처리조 | | 723.00 |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35), 갑라제4호증2 | | 종합폐수처리장(950.48㎡)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㎡에 대한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723.00 |
| | | 18 | 종합폐수처리조 | | 950.48 | |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,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4~55번), 갑라제4호증3 | | 폐수처리장(723㎡)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상동 | 950.48 |
| |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 | | 3,678.21 | |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 (세부내역) | | 상동 | 3,678.21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수조 | 19 | 다툼 없는 수조 | 3,780.00 | 3,780.00 | | [illegible]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/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. 해당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 그 기능은 좌동에 기술한 것과 동일함 중부발전은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음으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.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,80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3,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.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1호증 2내지4 갑라제4호증3 |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한다. | - |
| | | 20 | 다툼 없는 수조 | 4,200.00 | 4,200.0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 3 | 상동 | | 상동 | - |
| | | 21 |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| 131.22 | 131.22 | | 기신고 면적은 187.5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 1 | 침전조의 경우,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상동 | - |
| | | 22 | 수조(SLP) | | 1,200.00 | | 기신고면적 | 갑라제1호증12(신고서일련번호 98번) | SLP의 경우,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1,200.00 |
| | | 23 | 수조(조절지) | | 432.00 | |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,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), 갑라제4호증의2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32.0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| 24 | 수조(SLP 취수로) | | 1,096.31 | | 1. 기신고 면적<br>2. 2012.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8,59번), 갑라제4호증3 |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1,096.31 |
| | | 25 | 수조(CWP STRUCTURE) | | 446.3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2,53번), 갑라제4호증3 |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. | |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| 446.30 |
| | | | 다툼없는 수조 | | 8,882.47 | | 1.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<br>2.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갑라제4호증의1내지3 |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(세부내역)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8,849.21 |
| | 건축물 | 26 |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| | 201.88 | |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| 사진2, 갑라제5호증1내지2 |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. 또한,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. | | 건축물로 인정 | 201.88 |
| | | 27 |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| | 201.88 |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 상동 | 201.88 |
| | | 28 | 한전산업사무실 | | - | | 2005년부터 임대 | | | | | |
| | | 29 | 석회석사일로지지대 | | - | |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<br>(삭제면적:143.20) | 사진3 |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. | | | |
| | | 30 | 다툼 없는 건축물 | 63,192.26 | 63,192.26 | | | | | | | 63,192.26 |
| | 소계 | | | 86,878.50 | 91,426.58 | | | | | | | 91,426.58 |
| |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13,788.20 | 13,788.20 | 0.00 | | | | | | 13,788.2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양양 | 건축물 | 2 | 지하발전소 | | 4,548.08 | 4548.08 | 지하발전소 내 시설된 기계장치와 개폐장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| "갑다 제8호증"(2012.08.13) | | 양수발전소 홍보자료엔 2,400㎡로 홍보됨(폭20m,길이120m).2006년이후 6,948.08㎡로 증가된 증거 없음.<br>-당초 안분계산시 2005년 2,400㎡, 2006년이후 6,948.08㎡로 안분계산. 홍보자료의 연면적 적용시 2006년 이후 4,548.05㎡는 제외되어야 함. | 을제70호증 | 제출된 증거로 면적 인정함 | 4,548.08 |
| | 저장조 | 3 | 하부댐 | | - | 0.00 | | | | | | | - |
| | 시설물 | 4 | 다툼 없는 시설물 | 73,090.30 | 73,090.30 | 0.00 | | | | | | | 73,090.30 |
| | 소계 | | | 250,113.57 | 274,423.90 | | | | | | | | 59,892.87 |
| | 저장조 | 1 | 다툼없는 상부댐유수지 | 200,000.00 | 200,000.00 | 0 | -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<br>-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<br>-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| 참고자료 4-1 | |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시설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'수조'로 볼 수 없음.<br>특히, 2004년~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. 시설물로서 2004년~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.1.1이므로 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.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시에도 존재(2,569,690.25㎡)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. | 참고자료 11: 2008년 감심제180호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그 댐체를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한다. | - |
| | 도로 | 2 | 진입도로포장 | | 17,880.00 | 17,880.00 |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진입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| 2012. 3. 30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-2 | | 진입도로는 한전이 지자체에 이관하여 준공하는 등 지자체가 관리하여 구내도로로 볼 수 없음. | 2012.5.14.준비서면 참고자료 1-4: 상부댐진입도로설명서 |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. | 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인제 | | 3 | 상부댐횡단도로 | | 2,040.00 | 2,040.00 |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상부댐횡단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| 상동 | 횡단도로의 경우 댐체 면적과 중복되어 제외되어야 함. | 2012.5.14.준비서면 참고자료 1-6 |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. | 2,040.00 |
| | 기타 | 4 | 다툼없는 상부댐체 | 41,640.00 | 41,640.00 | - | | | | | | 41,640.00 |
| | | 5 | 상부댐체옹벽 | | 7,739.30 | 7,739.30 | 물을 저장하기 위해 상부댐의 일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막은 시설물로서 전체면적이 49,379㎡이나 41,640㎡을 신고함. 나머지 7,739㎡도 추가로 포함해야 함. | 2013. 6. 19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-1, 3-2 | 상부댐체를 당초 상부댐이라 하다가 이후 댐체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참고자료 1-6을 보면, 상부댐 전체 면적이 49,379.82㎡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전체면적의 84%를 상회하는 41,640㎡를 댐체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상황임.<br>참고자료 1-2자료에 의하면 상부댐의 경우 댐마루폭 10m이고, 댐길이 335m로 댐체면적은 3,350㎡임.<br>위 사항과 같이 상부댐체와 상부댐체 옹벽은 중복되는 면적임. | 2012. 5. 14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-6 |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. | 7,739.30 |
| | | 6 | 다툼없는 시설물 | 4,888.35 | 4,889.38 | - 1.03 | 주차장 면적 2,762㎡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시설물에 포함됨 | 참고자료 2-2 | 다툼없음 | | | 4,888.35 |
| | | 7 | 기타시설물 | 3,350.00 | - | 3,350.00 | 피고가 댐체의 면적을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댐마루의 면적으로 착오하여 주장한 사항임 | 2013. 6. 19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-1, 3-2 | 당초 원고보조참가인이 댐체관련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41,640㎡에 포함되는 면적(3,350㎡)으로 댐마루폭 10m, 댐길이 335m에 해당됨. | 2012. 5. 14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-6 |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. | 3,350.00 |
| | | 8 | 다툼없는 건축물 | 235.22 | 235.22 | 0 | | | | | | 235.22 |
| 인천 | 소계 | | | 95,368.98 | 95,368.98 | | | | | | | 95,368.98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95,368.98 | 95,368.98 | | | | | | | 95,368.98 |
| 제주 | 소계 | | | 39,715.09 | 39,715.09 | | | | | | | 39,715.09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39,715.09 | 39,715.09 | | | | | | | 39,715.09 |
| 보험(피고 | 전 체 | | - | ######## | 460,856.18 | | | | | | | 1,107,675.94 |
| 합계 | 전 국 | | | 4,908,556.22 | 1,115,442.25 | - | - | - | - | - | - | 1,945,639.95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별지

#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울 | 소계 | | | 42,033.35 | 45,870.14 | | | | | | | 47,335.19 |
| | 기타시설 | 1 | 다툼 없는 시설물 | 3,913.45 | 3,913.45 | | | | | | | 3,913.45 |
| | 건축물 | 2 | 사 택 | - | 3,836.79 | | 1.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<br>2.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 제18호증(위성사진), 건축물대장(갑 제31호증) |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, 서울사업장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므로,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. | 3,836.79 |
| | | 3 | 합숙소 | - | | | 1.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<br>2.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.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,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| 갑제18호증, 갑제31호증 | 당초 원고가 주장한 1,465.05㎡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. 2012.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. | 을제16호증 1내지14, 을제38호증 1내지4 | 상동 | 1,465.05 |
| | | 4 | 다툼없는 건축물 | 38,119.90 | 38,119.90 | | | | | | | 38,119.90 |
| | 소계 | | | 63,608.56 | 106,452.36 | | | | | | | 85,224.11 |
| | | 1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 | 잔교도크 | - | 5,562.00 | |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| 2015. 4. 10. 준비서면(사진1), 갑라제1호증9(신고서일련번호74번) | 잔교도크 면적을 5,562㎡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. | |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. | 0 |
| | | 3 | 다툼없는 인공시설 | - | 0.00 | | 법면,옹벽,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(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) | 2012. 4.4.자 의견서 참조,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|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함. | | 상동 | 0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/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/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/ 법원의 판단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기타시설 | 4 | SL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,043.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,043.96㎡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.<br>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.<br>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"수조", 펌프장치(STRUCTURE)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.<br>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. | |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. | 0 |
| | | 5 | CWP STRUCTURE | | 0.00 | 불특정 | 1. 비과세시설물(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.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)<br>2.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.<br>3.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<br>4.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. | 1.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<br>2. 원고의 소장 p.22~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<br>3.갑라제1호증의 14(추가63번) |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.3㎡였다가 비과세 주장.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. | | 상동 | 0 |
| | | 6 | 냉각수배수관1호기 | | 220.86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.00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20.86으로 수정하였음. | 2015. 7. 2.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), 갑라제1호증의10 |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. | 0 |
| | | 7 | 냉각수배수관2호기 | | 284.81 | 불특정 |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.40이였으나,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, 284.81로 수정하였음. | 상동 | 상동 | | 상동 | 0 |
| | | 8 | 송수관 | | 495.13 | 불특정 |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. 4.23.~5.8.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.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2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95.13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서천 | 급배수시설 | 9 | 송수관 | | 600.55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회처리장 관로길이(1.6㎞,3㎞)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. | | 상동 | 600.55 |
| | | 10 | 송수관 | | 129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.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. | | 상동 | 129.00 |
| | | 11 | 송수관 | | 24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. 또한, 직경1.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. | | 급배수시설이 아닌 송수관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. | 0 |
| | | 12 | 송수관 | | 480.00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.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. | | 송수관으로 볼 증거가 없다. 오히려 물을 운반하는 송수관이 아닌 회처리배관으로 보인다. | 0 |
| | | 13 | 송수관 | | 884.6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1.52m,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0 |
| | | 14 | 송수관 | | 2,399.74 | 불특정 | 상동 | 상동 | 2펌프장 관련 직경 2.81m,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. | | 상동 | 0 |
| | | |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| | 3,666.61 | 불특정 |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| 상동 |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.(세부내역) | | 급배수시설이 아닌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그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| 0 |
| | 기계장치 | 15 | 기계장치 | | 1,648.4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갑라제1호증11(신고서일련번호 95번), 갑라제3호증의1내지7 |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3,399.60 |
| | | 16 | 기계장치 | | 308.31 | 불특정 |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.31이나, 피고기준의 면적은 1,096.71 (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이어 벨트-인도구간면적 788.4임)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3호증1내지7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상동 | 308.31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| [illegible] | 17 | 탈황폐수처리조 | | 723.00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35), 갑라제4호증2 | 종합폐수처리장(950.48㎡)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㎡에 대한 증빙이 없음. | | 상동 | 723.00 |
| | | 18 | 종합폐수처리조 | | 950.48 | 불특정 |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,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(저장시설 신고연번 54~55번), 갑라제4호증3 | 폐수처리장(723㎡)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상동 | 950.48 |
| |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 | | 3,678.21 | 불특정 |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,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| |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 (세부내역) | | 상동 | 3,678.21 |
| | | 19 | 다툼 없는 수조 | - | 3,780.00 | |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/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. 해당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 그 기능은 좌동에 기술한 것과 동일함 중부발전은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음으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.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,80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3,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.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|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제외되어야 한다. | - |
| | | 20 | 다툼 없는 수조 | - | 4,200.0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3 |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상동 | -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 | 원고, 보조참가인 입증자료 | 피고 주장 | 피고 입증자료 | 법원의 판단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 | 수조 | 21 |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| - | 131.22 | | 기신고 면적은 187.50이였으나,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, 갑라제4호증1 | 침전조의 경우,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. | | 상동 | - |
| | | 22 | 수조(SLP) | - | 1,200.00 | | 기신고면적 | 갑라제1호증12(신고서일련번호 98번) | SLP의 경우,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1,200.00 |
| | | 23 | 수조(조절지) | | 432.00 | |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,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), 갑라제4호증의 2 | 산출근거나 증빙없음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32.00 |
| | | 24 | 수조(SLP 취수로) | | 1,096.31 | | 1. 기신고 면적<br>2. 2012.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58,59번), 갑라제4호증3 |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. | | 급배수시설이 아닌 수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그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| - |
| | | 25 | 수조(CWP STRUCTURE) | | 446.30 | | 상동 | 2012.5.16.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(저장시설 신고연번 52,53번), 갑라제4호증3 |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. | |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. | 446.30 |
| | | | 다툼없는 수조 | | 8,882.47 | |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| 갑라제4호증의1내지3 |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 (세부내역) | | 상동 | 8,849.21 |
| | 건축물 | 26 |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| | 201.88 | |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| 사진2, 갑라제5호증1내지2 |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. 또한,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. | | 건축물로 인정 | 201.88 |
| | | 27 |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| | 201.88 | | 상동 | 상동 | 상동 | | 상동 | 201.88 |
| | | 28 | 한전산업사무실 | | | | 2005년부터 임대 | | | | | 0 |
| | | 29 | 석회석사일로지지대 | | - | |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<br>(삭제면적:143.20) | 사진3 |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. | | | 0 |
| | | 30 | 다툼 없는 건축물 | 63,608.56 | 63,608.56 | | | | | | | 63,608.56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양양 | 소계 | | | 15,507.69 | 40,120.07 | - | - | - | - | - | - | 6,948.08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13,107.69 | 13,107.69 | 0.00 | | | | | | |
| | | 2 | 지하발전소 | 2,400.00 | 6,948.08 | | 지하발전소 내 시설된 기계장치와 개폐장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| "갑 제8호증"(2012.08.13) | 양수발전소 홍보자료엔 2,400㎡로 홍보됨(폭20m,길이120m).2006년이후 6,918.08㎡로 증가된 증거 없음.<br>-당초 안분계산시 2005년 2,400㎡, 2006년이후 6,948.08㎡로 안분계산. 홍보자료의 연면적 적용시 2006년 이후 4,548.05㎡는 제외되어야 함. | 을제70호증 | 제출된 증거로 면적 인정함 | 6,948.08 |
| | 저장조 | 3 | 하부댐 | - | 320.00 | | 수조에 해당되는 시설물임 | "갑 제5호증의 1내지7"(2012.08.13) | 어도는 댐체시설물로서 '수조'아니어서 2007년도 과세제외대상임. | 참고자료 21 참고자료 11: 2008년감심 제180호 |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. | - |
| | 시설물 | 4 | 다툼 없는 시설물 | - | 19,744.30 | | 저류보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| | 저류보로 표기하고 있으나 저류보 전체면적인지 제방면적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음. 제방개념의 면적은 2005년~2006년은 포함대상이나 2007년은 제외임. | |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. | - |
| | 소계 | | | 3,707.57 | 251,741.90 | - | - | - | - | - | - | 2,127.38 |
| | 건축물 | 1 | 다툼없는 건축물 | 235.22 | 235.22 | | | | | | |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인제 | 저장조 | 2 | 상부댐유수지 | | 200,000.00 | | -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<br>-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<br>-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| 참고자료 4-1 |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시설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'수조'로 볼 수 없음.<br>특히, 2004년~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'수조'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. 시설물로서 2004년~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.1.1이므로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.<br>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시에도 존재(2,569,690.25㎡)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. | 참고자료 11: 2008년감심 제180호 |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. | - |
| | 기타 | 3 | 상부댐체 | | 41,640.00 | | 양수댐중 상부댐의 실질적인 용도는 발전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로서 수조에 해당함 | 2012. 3. 30.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-2 | 감사원심사결정서상 수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로서 2007년는 제외대상임.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보령시에도 존재(2,569,690.25㎡)하고 있음. | 참고자료 11: 2008년감심 제180호 | 상동 | - |
| | | 4 | 상부댐체옹벽 | | 7,739.30 | | 양수댐중 상부댐의 실질적인 용도는 발전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로서 수조에 해당함 | 상동 | 감사원심사결정서상 수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로서 2007년는 제외대상임.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보령시에도 존재(2,569,690.25㎡)하고 있음. | 참고자료 11: 2008년감심 제180호 | 상동 | - |
| | | 5 | 다툼없는 시설물 | 3,472.35 | 2,127.38 | | 수로터널, 취수로 및 풍력발전기의 면적이 2,127.38로써 시설물에 해당하며, 그 이외의 부분은 특정되지 않음 | | 다툼없음. | | | 2,127.38 |

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3

| 지역 | 구분 | 순번 | 시설물명 |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(㎡) | 원고, 보조참가인 주장면적(㎡) |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|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| |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| | 법원의 판단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쟁점 | 원고, 보조참가인 | | 피고 | | | |
| | | | | | | | 주장 | 입증자료 | 주장 | 입증자료 | 내용 | 인정 면적(㎡) |
| 인천 | 소계 | | | 104,460.80 | 104,460.80 | | | | | | | 104,460.80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67,632.57 | 67,632.57 | | | | | | | 67,632.57 |
| | 시설물 | 2 | 다툼 없는 시설물 | 36,828.23 | 36,828.23 | | | | | | | 36,828.23 |
| 제주 | 소계 | | | 39,783.03 | 39,783.03 | | | | | | | 39,783.03 |
| | 건축물 | 1 | 다툼 없는 건축물 | 28,673.47 | 28,673.47 | | | | | | | 28,673.47 |
| | 시설물 | 2 | 다툼 없는 시설물 | 11,109.56 | 11,109.56 | | | | | | | 11,109.56 |
| 보령 | 전 체 | | - | 666,056.62 | 466,123.95 | | | | | | | 462,205.42 |
| 합계 | 전 국 | | | 935,157.62 | 1,054,552.25 | - | - | #VALUE! | - | #VALUE! | - | 748,084.01 |

. 끝.